

총칙

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외출 제한 관련 감염 보호법 관련 조치 시행

작센 주 사회 복지부 공표

2020년 3월 22일 문서 번호 15-5422/10:

(...)

1. 정당한 이유 없이 자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.
 2. 정당한 이유는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:
 - 2.1. 생명,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.
 - 2.2. 전문적인 직업 활동 수행(이는 해당 업무 위치를 오가는 행위 역시 포함).
 - 2.3. 2020년 3월 18일에 공표된 보육 시설 및 학교 관련 작센 사회 복지부의 총칙에 따라 비상 보육 시설을 오가는 행위 및 2020년 3월 20일에 공표된 작센 사회 복지부의 총칙에 따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오가는 행위 또는 직업상의 허가를 받은 보육 서비스를 위한 이동.
 - 2.4.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여 주민에 대한 공급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(봉사활동 행위 포함).
 - 2.5. 우편 및 물류 배달을 포함하여 필요한 배달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.
 - 2.6. 소방, 구조 또는 재난 구조 인력이 해당 거점 및 출동 위치로의 이동.
 - 2.7. 의학적, 심리 사회적 및 수의학적 치료 행위를 위해(예: 의사 왕진, 의료 처치 및 필요한 전문 상담, 혈액 및 혈장 기증), 의료 및 건강 전문 인력의 방문(예: 노인 및 요양원의 심리 및 물리 치료사), 또는 긴급한 목회 활동의 일환으로.
 - 2.8. 일상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위해(식료품 소매, 도매, 음료 매장, 애완동물 용품 매장, 약국, 위생용품 매장, 안경점, 보청기 전문가, 은행, 저축 은행 및 ATM, 우체국, 주유소, 자동차 및 자전거 정비소, 세탁소, 신문 판매점 및 우편 투표 발송 등).
 - 2.9. 당국, 법원, 집행 담당자, 변호사 및 공증인과 지연할 수 없는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.
 - 2.10. 배우자, 파트너 및 장기적인 관계를 맺은 인생의 동반자,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, 환자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(기관 외에 거주)을 방문 및 개인적인 범위에서 적법한 양육권 행사를 위한 방문.
 - 2.11.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및 미성년자 동행.
 - 2.12. 가까운 가족의 사망 및 장례식, 이 경우 15인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 - 2.13. 자신의 거주 영역 주변의 야외에서 스포츠 및 활동, 연방 소형 정원법에 의거하여, 자기 소유의 소형 정원(주말농장) 방문, 혼자 또는 파트너/배우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, 5인을 초과하는 그룹이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.
 - 2.14. 동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.
- 이러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의 경우, 해당 사유는 당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. 특히 고용 증명서, 기업 또는 서비스 증명서 또는 개인 서류를 소지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.
3. 작센 사회 복지부의 § 2에 의거하여 노인 및 요양원, 시설 및 외래 환자 거주지 및 장애인 주거 시설 방문, 병원 또는 병원에 준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예방 및 재활 시설 방문을 금지됩니다 (§ 23 제3절 제1 및 3호 IfSG에 따른 시설). (...)
 4.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외에서 타인과의 신체 및 사회적 접촉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. 가능하면 두 사람 사이에 최소한 1.5m의 거리를 유지합니다.
 5. 해당 총칙의 제1항 및 3항을 위반하는 경우, § 75 제1절 제1호 IfSG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.
 6. 코로나 전염병 억제를 위한 지역 당국의 명령 강화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
 7. 본 총칙은 § 16 제8절 IfSG와 관련하여 § 28 제3절에 따라 즉시 시행됩니다.

8. 본 총칙은 2020년 3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되며, 2020년 4월 5일 24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정지됩니다.

(...)

2020년 3월 22일, 드레스덴

작센 주 사회 복지부

국무장관 **Petra Köpping**

§ 28 제1절 제2조 IfSG에 따라 시행된 명령 위반은 § 75 제1절 제1호 IfSG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